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66 2021. 3. 23.(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김국기 의원

나. 발의일자: 2021년 3월 3일

다. 회부일자: 2021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2021년 3월 15일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O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국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어린이에게 놀이는 생활이자 배움의 과정으로 행복감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놀이시간이 부족한 상태임. 이에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O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O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 O 지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O 실태조사(안 제5조)
- O 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운영(안 제6조~제8조)
- O 학교의 지원(안 제9조)
- O 교사 연수(안 제10조)
- O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O 시행규칙(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홍만표)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교육 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자체 실 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에서는 교육감이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두면서, 안 제7조와 8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였음.
-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실시하는 각종 지원 사업과 교사연수, 협력체계 구 축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
-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 활동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가칭)중북부교육시설복합센터내에 놀이공간을 설치 하고, 유치원 및 초등학생 대상 놀이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 5. 토 론 요 지: "생략"
-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고 성 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어린이" 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 2. "학교" 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3. "놀 권리"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 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방안
- 3. 놀이시설 및 공간, 놀이시간 확보 방안
-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 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방안
- 6. 놀이 관련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 7.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
- 8.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③ 학교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 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제4조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 4.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5.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유치원, 초등교육 전문가
 - 2. 유치워. 초등학교 교사
 - 3.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부모
 - 4. 그 밖에 어린이 놀이문화·놀이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학교의 지원)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교사 연수) 교육감은 교사의 놀이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 령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발효일 1991. 12. 20][다자조약, 제1072호, 1991. 12. 23]

제31조

-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 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 1. 초등학교
-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 4. 특수학교
-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3. "보호자" 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4. 삭제 〈2012. 3. 21.〉
- 5. 삭제 〈2012. 3. 21.〉
-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 및 놀이교육 교원전문성 강화
- 놀이시설, 공간, 시간 확보 지원
-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놀이문화 공감대 확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 기 어려움